##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민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153

발의연월일: 2025. 3. 20.

발 의 자:한민수・박상혁・이춘석

이연희 · 임오경 · 최민희

서영교 • 박용갑 • 허종식

안규백 · 한준호 · 이해식

이해민 • 박균택 • 박해철

황정아 의원(16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6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은 지원대상학생 및 보호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학생맞춤통합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음. 그러나 가정폭력 및 보호자의 방임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, 탈북학생또는 다문화 학생의 경우 지원대상학생이 원하더라도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필요함.

이에 개정안은 가정폭력 및 보호자의 방임 등으로 인한 학생의 신체적·정신적·정서적 피해가 판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의 동의만으로 학교장이 판단하여 긴급지원을 할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법률 제20671호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1조

제3항 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671호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가정폭력 및 보호자의 방임 등으로 인한 학생의 신체적·정신 적·정서적 피해가 판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의 동의만으로 학교장이 판단하여 긴급지원을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법률 제20671호 학생맞춤통합지	법률 제20671호 학생맞춤통합지		
원법	원법		
제11조(학생맞춤통합지원 등) ①	제11조(학생맞춤통합지원 등) ①		
·② (생 략)	·② (현행과 같음)		
③ 교육감, 교육장 및 학교의	3		
장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하려			
는 경우에는 지원대상학생 및			
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			
<단서 신설>	다만, 가정폭력 및 보호자의 방		
	임 등으로 인한 학생의 신체적		
	·정신적·정서적 피해가 판단		
	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	
	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의 동의		
	만으로 학교장이 판단하여 긴		
	급지원을 할 수 있다.		
④ ~ ⑥ (생 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		